

# 2025년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 공고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2025년도 G-스타트업 예비창업 청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6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0월(8개월)
-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기반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만 18세~45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업력 1년 미만 창업자
- 대상업종 : 기술기반업종(제조, 지식서비스, ICT·빅데이터, AI 등)
  -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융합) 관련 업종 우대
- 모집규모 : 15팀
- 운영기관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40백만원), 교육·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 지원조건 : 도비 지원금 80%, 창업기업 자부담금 20%(현금 10%, 현물 10%)

## □ 신청 · 접수

- 접수기간 : 2025.1.6.(월) ~ 1.26.(일) 23:59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구글폼 접수(PDF 파일접수)
  - \* 신청서류 접수확인 안내 예정(미확인시 문의요망)
  - \* 접수된 서류의 미비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기업)의 책임임
- 접수처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육성1본부
  - 주소 :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7, 5층
  - 이메일 / 문의처 : [hjwizer@ccei.kr](mailto:hjwizer@ccei.kr) / 033-248-7982/7981/7947
- 신청서류(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

## □ 추진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25. 1월 6일 ~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공고(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li> <li>▸ 참여자 신청·접수 (20일간)</li> <li>-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접수</li> </ul>
평가위원회 구성	'25.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회 구성 : 3~5명</li> <li>- 창업관련 기관, 교수, 전문가 등</li> </ul>
요건검토	'25.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li> <li>▸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검토</li> </ul>
사업선정 평가	'25. 2월 10일 ~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서류평가 (1.5배수 내외 선발)</li> <li>▸ 2차 발표평가(필요시 현장 확인 평가 시행)</li> <li>-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사업비 적정성 심의</li> <li>▸ 최종 선정 공지</li> </ul>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25. 3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체결 (3월)</li> <li>▸ 맞춤형 사업화 지원 추진 (8개월간)</li> </ul>
사업점검 및 최종평가	'25. 7월 ,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중간 점검(7월) 및 인센티브 지급(8월)</li> <li>▸ 창업기업 회계감사(11월)</li> <li>▸ 최종 사업평가 (11월)</li> </ul>
회계감사	'26.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운영기관)</li> </ul>

###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 강원특별자치도 도내에서 창업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대학(원) 재학생 제외(단,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 창업자)
- 총사업비 중 일정부분(현물 10%이하, 현금 10%이상)을 자부담을 하며,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자 \* 이행보증보험은 사업기간과 관리기간을 포함하여 가입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동종업종의 경우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신청 시 공동대표로 신청해야 함(선정 이후 공동대표로 변경 불가(관리기관 포함))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지원제외)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동일과제\*로 신청하는 자(기업)

\* 동일과제 : 기존 제품/서비스의 핵심 사항에 개선 및 발전 사항이 없는 동일한 과제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 포기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채무상환 중인 사람 포함
  -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채무상환 중인 사람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는 자\*
  - \* 단, 도내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고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도용하여 제출한 자\*
  - \* 팀원으로 참가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수혜 받았던 사업계획서로 신청하는것도 도용의 범주에 포함

## 4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요건검토	운영기관	·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서류평가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 기술·시장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비 적정성 심의
최종선정	운영기관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공지(공고) · 대상자에게 지원금 안내

### ① 1단계 평가(서류평가)

#### <창업기업 선발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주요평가내용
문제인식	30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동기, 목적 및 필요성 등
해결방향	30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등
성장전략	20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팀구성 및 기술	20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기술개방 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 가 점 : 최대 3점(항목별\* 0.5점)까지 부여

- ①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 ② (기창업자) 여성·장애인·벤처기업
- ③ 최근 2년 이내 도내 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④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최·운영 대회에 한함)
- 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G-아카데미 창업교육 이수자
- ⑥ 정부·민간사업(산학연) 참여 이력이 있는 자(기업)

### ② 2단계 평가 : 발표평가

※ 발표는 신청기업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 참석하지 못할 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팀원이 발표

### ③ 최종선정 : 기업별 지원 금액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 ※ 평가 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금 균등 지원
-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할 수 있음

5

## 지원내용

### □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인(기업)당 20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도비 지원금 80%, 자부담 20%(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사업비 구성】 ※참가자(기업) 전원 동일 고정 사업비 /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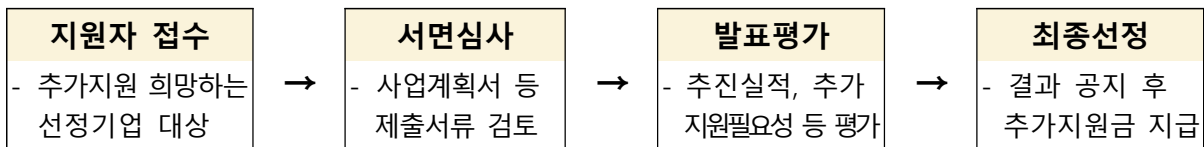
총사업비(100%)	도비지원금(80%)	현금 자부담(10%)	현물 자부담(10%)
25,000,000	20,000,000	2,500,000	2,500,000

**【사업비 집행기준】**

구 분	예산 범위	집행 주요내용(예산항목)
합 계	100%	-
참여인력 인건비	총사업비 30% 이하	- 사업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규채용하는 인력 인건비 예산 범위내 집행 가능 - 대표자와 현물로 잡은 직원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사업화 사업비	총사업비 40% 이상 가능	- 외주용역비 - 재료비 - 마케팅비 - 기계장치 구입(총사업비 10% 이하) - 기자재임차비 - 특허권·무형자산취득비
창업공간 임차료 (지급수수료)	총사업비 10% 이하	- 사무실, 작업공간 등
기술정보활동비 (지급수수료)	총사업비 10% 이하	- 시험인증비, 기술이전비, 멘토링비, 교육훈련비 - 회계감사비(의무계상)
현물산정비	총사업비 10% 이하	- 재료비, 대표자/직원 인건비, 기자재비, 사무실 임차비 현물 자부담 산정

○ 우수기업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인센티브)

- ① 평가기간 : '25. 7~8월
- ② 지원대상 : '25년 선정 창업기업
- ③ 지원규모 : 1인(기업)당 20백만원 ~ 5백만원, 8개사 지원
- ④ 평가방법



## □ 창업교육 지원

- 교육구성 : 사전교육, 역량강화교육, 심화교육 등 40시간
- 교육이수 : 창업기업은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 특화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킹, 투자연계, 마케팅 지원 등

##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회 제공

- 협약 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입주기회 제공
  - \* 무상입주, 입주 결정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심사를 통해 진행
- 입주 후 공간 운영 및 관리 사항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정에 의거함

## □ 우수기업 투자연계 기회 지원

- 우수평가 및 우수성과 창업기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연계 기회 제공
- 투자 결정 사항 및 절차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규정 및 기준에 의거함

# 6

##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을 위배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다.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자(기업)에게 있다.

###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 과정에 신청자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도비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은 전액 반환 조치합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팀원으로 참가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수혜받았던 사업계획서로 신청하는 것도 도용의 범주에 포함
- 신청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한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 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 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 등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 실패범위 : 사업종료까지 시제품 미완성, 또는 사업 기간 종료까지 사업자등록 미이행
- 사업종료 후 1년의 관리기간 동안 휴폐업,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 기 집행분 전액 환수
- 사업종료 후 3년 기간 동안 운영기관의 사업화 현황, 경영성과 등 조사에 성실히 응답하고 관련 자료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육성1본부)	연락처	☎ 033-248-7982/7981/7947 ✉ hjwizer@ccei.kr
-----	-------------------------	-----	---